

정관 (초안)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제 1 장 총칙

1 조. 목적

미주 동포 장애인의 생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통합사회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장애인 체육단체를 관리, 지도하고 경기인을 양성하여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명칭 및 주소

- 1항) 명칭은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표기한다.
- 2항) 영문은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본부는 미국 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본부 사무소를 회장 거주지 혹은 제 3 의 도시에 둘 수도 있다.

3 조. 사업

본회는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항) 장애인 생활 체육 교실 운영, 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 2항) 미주내 지역별 장애인 체육 교류
- 3항) 미주내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을 한다.
- 4항)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5항)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발행물 발행
- 6항)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 2 장 구성

4 조. 본회는 본부와 이사회, 지역 체육회, 중앙 경기단체로 구성

5 조. 지역 체육회

- 1항) 미주 전역을 7 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체육회를 둔다.
- 2항) 지역 체육회는 본회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3항) 지역 체육회 가입 승인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지역 체육회 현직 대표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4항) 지역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두며 승인된 가맹단체는 중앙 경기단체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5항) 지역 체육회 규정을 별도로 세칙으로 정한다.

6 조. 중앙 경기단체

- 1항) 본회의 가맹 승인된 각 종목별 중앙 경기단체는 전국적 조직체를 갖춘 한인 경기단체를 말한다.
- 2항) 본회 가맹 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3항)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 체육회에 가입된 지역 경기단체를 산하 단체로 두어야 하며 중앙 경기단체의 가맹 승인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 4항) 중앙 경기 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 개 이상의 지역 경기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5항) 중앙 경기단체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7 조. 가맹단체 대표자 인준

- 1항)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항) 각 단체는 회장 선출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결과 내용을 30 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항) 본회 승인된 단체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는다면 본회 규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
- 4항) 각종 총회 보고서 양식은 본회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조. 탈퇴

본회에서 승인된 가맹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1 호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로 탈퇴시킬 수 있다. 단, 이사회에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 1항) 가맹단체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 2항)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승인된 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 년 이상 참관 또는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 3항) 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



제 3 장 조직

본회는 본부 및 이사회로 구분된다.

9 조. 본부

본부는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1항) 임원

1. 회 장 1 인
2. 수석 부 회 장 1 인
3. 부 회 장 1 인
4. 사 무 처 장 1 인
5. 사 무 차 장 1 인
6. 각분과위원장 8 인

2항) 감사

1. 감 사 1 인

3항) 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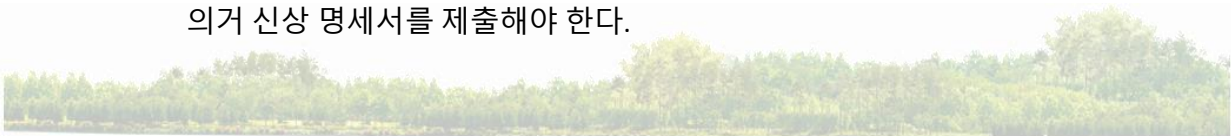
1. 총괄 기획 위원회
2. 소청 상벌 위원회
3. 재정 분과 위원회
4. 홍보 위원회
5. 생활 체육 위원회
6. 체전 분과 위원회
7. 대회 협력 위원회
8. 경기 기술 분과 위원회

4항) 위촉위원

1. 명예회장 1 인
2. 고 문
3. 자문위원

5항)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6항) 본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회 양식 (Washington 사무처에 배치)에 의거 신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10 조. 이사회 구성

본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추대 이사로 구성되며 추대 이사는 회장 추천으로 선임한다.

- 1항) 당연직 이사
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나. 각 지역 체육회장 및 중앙 경기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2항) 추대이사
가. 이사중 1 인은 재외 한인 체육단체 임원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나. 이사중 2 인은 장애인 선수 출신이어야 한다.
- 3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순으로 한다.
- 4항) 이사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를 관리한다.
- 5항) 본회의 사무처장 측은 사무차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

11 조. 임기

- 1항) 회장의 임기는 정기 2 년의 임기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항) 회장의 임기는 짝수연도 3 월 1 일부터 후년 2 월 말까지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항) 본회 회장은 본회 및 본회 산하 단체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 4항) 회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 및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 5항)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6항)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7항) 고문 및 자문 위원
가. 고문 및 자문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임이며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 8항) 이사
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소속 단체의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
나. 추대 이사는 2 년을 임기로 하며 회계년도 일로 임기를 마감한다.
- 9항) 임원들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12 조. 상임 이사회 설치 운영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항) 상임 이사를 이사회 동의하에 5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2항)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13 조. 본부 조직 선출 및 임명

1항) 임원

- 가. 회장 선거는 이사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받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나.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다. 후보자가 1 인 일 때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 라.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마.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며, 2 인 중 1 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 바.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여성 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항) 위촉위원

- 가. 명예회장: 직전회장이 자동으로 위촉된다.
- 나. 고문: 본회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 다. 자문 위원: 회장 지명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14 조. 임원 피임 자격

- 1항) 회장은 미국에서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3 년(1095 일) 이상 거주한 한인
- 2항) 한국 및 미합중국 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직을 포함한 본회의 어떠한 임원에 선출, 임명될 수 있다.
 - 가. 어느 단체에서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2 년 전인자
 - 나. 법범 행위로 인하여 미화 5 천불 이상의 금고형과 6 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다.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이 있는 자
 - 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
 - 마. 본회 및 본회 산하단체 그리고 동포사회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3항) 회장 피임 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당연직 이사를 임기 1 회 (2 년) 이상을 완수 한 자
나. 덕망이 있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5 조. 보선 및 직무대행

- 1항) 회장 보선 당사자와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 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 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 일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다. 회장 직무대행이 없을 때에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라. 보결 선거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2항) 감사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항) 임명 서면 결의
가. 회장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선출(감사 포함)은 서면 결의 이사회를 통해 선출 및 임명 동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16 조. 의무 및 권한

- 1항) 회장
가.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를 대표한다.
나. 본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
다. 각종 회의 소집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 각종 회의 결의 사항을 최종 확인, 공포한다.
마.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바. 재정, 업무 및 사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2항)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나.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사무처장

- 가. 본회 부회장을 보좌한다.
- 나. 본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다. 본회 임원 및 전국 가맹단체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 라.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사무차장

- 가.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나. 사무처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다. 재무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기록을 보관한다.

5항) 총괄 기획 위원회

- 가. 본회의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
- 나. 본회의 연중 사업의 예정을 작성, 실적 대비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
- 다. 본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

6항) 소청 상벌 분과 위원회

- 가. 본회 상벌 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나. 본회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징계 대상자를 선별, 심의한다.

7항) 출판 및 홍보위원회

- 가. 본회의 각종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한다.
- 나. 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회지를 출간한다.
- 다.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8항) 체전 분과 위원회

- 가. 본국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준비에 모든 업무를 관상한다.
- 나. 미주 한인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조직 위원회와 공조한다.
- 다. 본국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관장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9항) 대외 협력 위원회
주류 사회 및 미정부 기간을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를 본회를 대표해서 한다.
- 10항) 경기 기술 분야 위원회
 -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 운영을 관장한다.
 - 나. 각종 대회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11항) 감사
 - 가. 감사는 본회 재정 회계를 감사한다.
 - 나.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다.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 라. 감사는 감사 중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 마.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 때 보고한다.

17 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 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즉시 사임할 것으로 한다.
 - 가. 당연직 이사는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 나.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 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경우
- 2항) 회장은 당연직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 임원 외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 회의

18 조. 이사회

본회에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 1항) 정기 이사회
 - 가. 매년 2 월중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 나. 회장을 선출한다.
 - 다.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의결한다.
- 2항) 임시 이사회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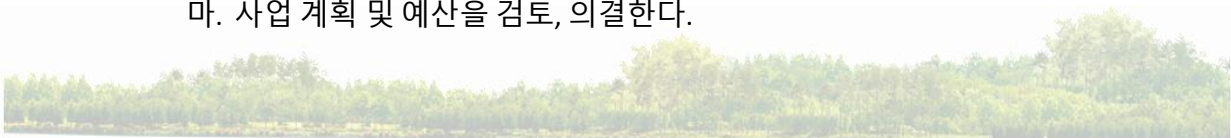
19 조. 상임 이사회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항)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동의하에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항) 긴급 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임명한다.
- 3항)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4항) 회장은 상임 이사 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2 주 이내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5항)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 이사회에 참석을 못할 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상임 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 6항) 상임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20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 나.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 동의한다.
- 다. 가맹단체 인준을 의결한다.
- 라.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을 한다.
- 마.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검토, 의결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바.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상기에 나열된 안건을 포함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1 조. 이사회의 소집

- 1항) 정기 이사회 총회는 매년 2 월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 2항)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21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항) 이사 1/3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5항) 이사회의 의결을 본회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항) 당연직 이사의 제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적 2/3 이상 참석자 2/3 이상 의결로 결정된다.
- 7항)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2 조. 서면 결의 이사회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항) 안건 결의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항) 서면 결의는 이사회 소집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나. 의제 및 긴급 개최의 사유 설명
 - 다.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
- 3항)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할 시에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



5 장. 회기 및 감사

23 조. 회기

- 1항) 본회 회기는 매년 3 월 1 일부터 후년 2 월 말로 하되 회장 선거가 있는 해는 정기 이사회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24 조. 감사의 원칙

본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나뉜다.

- 1항) 정기 감사
 - 가. 정기 감사는 매년 2 월 정기 이사회 총회 전에 실시한다.
- 2항) 특별 감사
 - 가.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나. 감사가 회계 업무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 다. 본회의 재적 이사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라. 본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 3항)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 4항) 감사는 감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감사에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



6 장. 사무처

25 조.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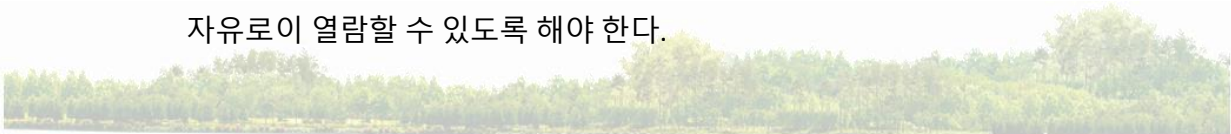
- 1항)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항)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항)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명은 인사 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4항) 직원은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산하 지부 포함) 및 장애인 체육회 산하 각급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6 조. 직제 및 규정

- 1항)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 2항)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주의 추진 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27 조. 행정 서류

-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가.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
 - 나. 본회 본부 조직 명부
 - 다. 중앙 경기 단체나 지역 체육회 명부
 - 라. 재정 출납 장부
 - 마.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
 - 바. 동산, 부동산 및 자채 목록
 - 사. 각종 회의록
 - 아. 사업 실적 기록부
 - 자. 공문서 발송처 및 접수처
- 2항) 사무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이외로 하고 본회의 이사가 요구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 자산 및 회계

28 조. 자산의 구분

- 1항)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 다. 회비
 - 라. 공공단체 보조금
 - 마. 기부금 및 찬조금
 - 바. 사업의 수익금

29 조. 예산 편성 및 결산

- 1항)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편성하여 정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 조. 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 회계로 한다.

31 조. 자산의 관리

- 1항)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자산으로 한다.
- 가. 부동산
 - 나. 기금
 - 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 2항) 본회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 나.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
 - 다. 차입금도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



32 조. 자금 조성

- 1항)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항) 각 단체의 가입비, 가맹비 회비는 아래와 같다.
 - 1) 각 단체 연회비는 1,000 불로 하고 당해 연도 5 월 30 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 2) 중앙 경기 단체 가맹비, 지역 체육회 가입비는 1 회에 한하여 1,000 불로 하고 가입 및 가맹 신청서 제출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3항) 본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 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선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 주 이내에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나. 단 미주체전, 전국 장애자 체전의 경우 행사 종료 후 90 일 이내로 결산 순이익금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4항) 찬조금 및 기부금
모든 찬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5항) 본회 사업 수입금
 - 가. 본회는 제 1 장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한다.
 - 나. 사업 종료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33 조. 자금 운영

- 1항) 자금 운영은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 2항) 본부는 모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이사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항) 모든 자국의 수입 및 지출은 재정 운영 위원회의 2 명 이상이 관리하도록 한다.
- 4항) 모든 지출은 “재 미국 대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 명의로 지출되어야 한다.
- 5항) 긴급을 요할 시 회장 직분으로 1,500 불 이내로 지출 승인할 수 있다. 단 10 일 이내로 모든 이사에 상기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그 사용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긴급을 요하지만 금액이 1,500 불 이상일 경우는 서면 결의 의사회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장. 회칙개정

34 조. 회칙개정 및 수정

- 1항) 회칙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을 심의한다.
- 2항)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을 소집된 정기 이사회에서만 상정되며 재직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5 조. 세칙운영

- 1항) 상별 및 포항 그리고 선거에 대한 규정은 별도 세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 2항) 선거에 대한 세칙은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통과한 후 시행된다.
- 3항) 소청 상별 및 포상에 대한 세칙 또한 소청 상별 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이사회의 승인 후 발현된다.

9 장. 보칙

36 조. 중재 및 조정

- 1항) 본회는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항) 중재 및 조정 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37 조. 제적인수

본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 정리, 자격정지된 자는 제적인수에서 제외된다.

38 조. 규정 및 세칙

- 1항) 본회는 본 정관의 준하여 선거 운영 세칙, 가맹단체 규정, 지역 체육회 규정, 상별 세칙, 포상규정 세칙, 체전 규정 등을 두어 시행한다.
- 2항) 중앙 경기 단체가 지역 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3항) 본회의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사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회 회칙의 유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4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통상 관례에 준하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 5항) 본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39 조. 기록

- 1항)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 가. 해당 연도 본부 조직 명부
 - 나. 중앙 경기 단체 및 지역 체육회 조직 명부
 - 다. 사업 성과
 - 1)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가 결과
 - 2) 본회가 행사 및 대회 참가 계획과 결과
- 2항) 상기 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로 한다.

40 조. 임기

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초대회장의 임기는 2020 년 2 월 29 일까지로 한다.

41 조. 회칙 발회

본 정관 및 그 부속 회칙과 문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제적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